

## 9 재정성과

###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2,901,367	2,800,260	101,107	3,451,251
부채 총계	103,122	121,765	-18,643	133,353
비용 총계	409,703	378,069	31,633	450,999
수익 총계	498,124	656,703	-158,579	550,642

-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3회계연도 결산)

- 가. 결산총평
- 나. 재무제표
-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라. 필수 보충정보
- 마. 부속 명세서

**♣ 2013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 <별첨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해설

#####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의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며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중단체평균
I. 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8.19%	2.31%	5.44%
	2. 실질수지비율	6.81%	7.55%	9.73%
	3. 경상수지비율	53.63%	70.11%	62.00%
	4. 관리채무비율	11.77%	13.35%	10.99%
	5. 관리채무부담비율	26.05%	32.21%	24.06%
	6. 관리채무상환비율	4.87%	3.76%	2.27%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56.72%	69.22%	57.89%
	8. 공기업부채비율	8.84%	160.65%	27.19%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2.87%	-0.36%	-3.30%
II.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32.53%	28.05%	22.29%
	10-1. 자체세입증감률	3.43%	3.65%	5.66%
	11. 민간이전경비비율	8.99%	8.18%	12.58%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2.74%	13.81%	9.84%
	12. 출연·출자금비율	4.60%	2.60%	3.11%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82.44%	1.19%	22.93%
	13. 의무지출비율	63.37%	58.64%	60.94%
	13-1. 의무지출 증감률	29.29%	11.68%	16.39%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3.66%	4.83%	5.51%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23.76%	13.14%	14.45%
	15. 자본시설지출비율	41.21%	21.51%	33.26%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14.20%	3.52%	5.11%	
III.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00	0.9963	0.9989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1754	-0.3339	-0.2595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633	1.0275	1.0676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983	-0.0955	-0.1859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84	0.9981	0.9956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691	-0.0034	0.0243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507	0.0851	0.0905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617	0.1931	0.1339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5284	-0.0321	-0.0396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376	-0.0579	-0.0130

▶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3년 재정분석 결과

※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우수지표**는 **민간이전경비비율, 지방세 체납액 축소노력도, 자본시설지출비율, 자체세입비율, 탄력세율 적용노력도**입니다. 민간이전경비비율의 경우 2011년 대비 사회단체보조와 민간자본보조를 축소하여 지표가 개선되었고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의 경우 부동산, 직장급여, 각종 채권, 금융재산 추심 등에 대한 압류 등의 실적으로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자본시설지출비율의 경우 도로 및 관광시설확충으로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자체세입비율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자체세입의 확충을 위한 징수대책 수립 추진 등의 효과로 지표가 개선되었고 탄력세율 적용노력도의 경우 지방세 추가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추진으로 인해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부진지표**는 **출연·출자금 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도**입니다. 출연·출자금의 경우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및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연·출자금지출로 동종단체에 비하여 부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출연·출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계획수립으로 지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채무상환비율의 경우 거가대교 건설, 쓰레기 소각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대형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로 인해 부진하였습니다. 향후 채무관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 및 구체적인 채무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채무를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도의 경우 2012년 경남도민체전 추진으로 부진하였으며 향후에는 각종 행사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행사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어해설

### ☞ 재정분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현황과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서 자치단체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등을 안전행정부에서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 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I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I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적수입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를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지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2년 회계기준 분석)

-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2013년 회계기준으로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받은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용어해설

##### ☞ 재정건전화계획(財政健全化計劃)

- 안전행정부에서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됩니다.



## 9-4.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과세·감면액 (A)	8,671	8,082	8,251	9,498	10,586
비과세	5,874	5,806	5,320	6,247	7,036
감면	2,797	2,276	2,931	3,252	3,550
지방세 징수액 (B)	151,107	130,863	166,747	175,307	161,003
비과세·감면율 (A/A+B)	5.43%	5.82%	4.71%	5.14%	6.17%

###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도 (A)	구성비 (%)	'12년도 (B)	구성비 (%)	증감 (C=A-B)	증감률 (C/B)
총 계	10,586	100%	9,498	100%	1,088	11.46%
일반공공행정	4,597	43.42%	3,907	41.14%	690	17.65%
공공질서 및 안전	12	0.12%	14	0.15%	△2	△11.45%
교육	332	3.14%	294	3.09%	38	13.01%
문화 및 관광	523	4.94%	450	4.74%	73	16.17%
환경보호	0	0%	0	0%	0	△53.00%
사회복지	1,126	10.64%	1,135	11.95%	△9	△0.84%
보건	137	1.29%	100	1.05%	37	37.58%
농림해양수산	152	1.43%	137	1.44%	15	10.77%
산업·중소기업	149	1.41%	137	1.44%	13	9.33%
수송 및 교통	5	0.05%	7	0.07%	△2	△27.48%
국토 및 지역개발	958	9.05%	943	9.92%	16	1.67%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2,464	23.28%	2,238	23.56%	227	10.12%
외국	0	0%	0	0%	0	0%
기타	131	1.23%	137	1.45%	△7	△4.79%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b>합 계</b>	<b>10,586</b>	<b>7,036</b>	<b>3,548</b>	<b>2</b>	<b>1</b>	<b>0</b>	
보 통 세	소 계	10,586	7,036	3,548	2	1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81	11	70	0	0	0
	재산세	9,567	6,826	2,739	1	1	0
	자동차세	935	199	735	1	0	0
	지방소득세	4	0	4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 적 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  
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용어해설**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지방세 감면, 비과세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 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3)

## 9-5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13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2	25,066
여성정책추진사업	22	21,78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	3,035
자치단체 특화사업	1	247

▶ 2013년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 보세요

성인지예산 바로가기 ⇒ <http://www.geoje.go.kr/index.sko?menuCd=AA03004013000>

([www.geoje.go.kr/정부3.0\\_정보공개/예산공개/성인지예산](http://www.geoje.go.kr/정부3.0_정보공개/예산공개/성인지예산))

### 용어해설

#### ☞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입니다.

#### ☞ 여성정책추진사업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9-6.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611,763	2,800	1

▶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 우리 시 19개 면·동 예산참여지역위원회에서 건의된 총 186건의 사업 중 126건의 사업에 대해 예산반영을 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예산은 총 2,800백만원입니다.

※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절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3월, 시 홈페이지) → 주민참여지역위원회 구성(4~6월)  
→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6월) → 각 면·동 예산참여지역위원회 개최(7월) → 건의사업 부서 검토(8~9월) → 예산안 제출(11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 보세요

주민참여예산제 바로가기 ⇒ <http://www.geoje.go.kr/index.sko?menuCd=AA03004012000>

([www.geoje.go.kr/정부3.0](http://www.geoje.go.kr/정부3.0) 정보공개/예산공개/주민참여예산)

### 용어해설

#### ☞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영되도록 2011년도에 도입한 예산입니다.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주민참여 조례 모델(안)>

구분	모델안 비교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지원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기타	제11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부칙	부 칙	부 칙	부 칙

##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자료 작성 완료 후 수시 공시 예정

##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자료 작성 완료 후 수시 공시 예정

## 9-9. 수의계약 현황

☐ 우리 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율(B/A)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01	139,217	438	9,311	24.32%	6.69%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 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 ❖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의계약 실적	건수	1,169	396	468	350	438
	금액	31,740	8,322	7,203	5,682	9,311

##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